

제 1210 호
1985.10.3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염 모 원
편집인: 공 보 관 이 광 우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시 보

차 례

◎ 고 시	
제 72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2
제 730 호: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제 731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및 부대시설) 시행허가정정	2
제 732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및 부대시설) 시행허가변경 (기간연장)	3
제 733 호: 독산제 15 어린이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4
제 734 호: 문래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7
제 735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11
제 736 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11
◎ 공 고	
제 64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12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803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72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79 호('84.8.13)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기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1985.10.30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강서구화곡동 477-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교) 및 명칭: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다. 변경허가사항
 착공일: '84.8.13
 당초준공예정일: '85.8.12
 연기준공예정일: '86.8.30
 라. 기타사항: 당초 허가사항과 변동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730 호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5.10.30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주)고성개발 대표:고성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용산구한남동 730 외 6 필지
 나. 면적: 5,704.51 ㎡
 다. 규모: 아파트 1 동 10 층 58 세대
 4. 사업기간: '85.10 - '86.10.31

◎서울특별시고시제 731 호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및부대시설)시행허가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6 호('85.8.28)로 시행허가 변경된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 및 부대시설) 중 다음과 같이 토지조서일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의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동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10.30

서울특별시장

가. 정정내역							
구분	소재지번	지목	지목 (㎡)	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관계인주소성명		
당초	강남반포영동제1지구산34의2	대	7,564	1,909	중로명물1가29	조석래	지하권
	"	대	7,564	75	"	조석래	완전 수용
정정	"	대	5,399	1,909	중구명동2가1번지	재단법인경성구	지하권
	"	대	5,399	75	"	천주교회유지재단	완전 수용

나.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6 호 ('85.8.28) 와 동일함.

◎서울특별시고시제 732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및부대
시설) 시행허가변경(기간연장)

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10.30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2 호 ('82. 3.9), 동고시 제 219 호 ('82.6.5) 동고시 제 544 호 ('83.10.22), 동고시 제 55 호 ('82.2.6) 및 동고시 제 141 호 ('83.3.11) 동고시 제 100 호 ('85.2.15) 및 동고시 제 508 호 ('85. 7.29) 와 동고시 제 564 호 ('85.8. 28) 로 허가된 지하철 3.4 호선의 건설사업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의 마목,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하고 동법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 1 비치하고 토지 및 건

가. 사업시행지

○ 시행구간

- 지하철 3 호선 : 구파발 - 양재, 지축차량기지 및 인입선
- 지하철 4 호선 : 상계동 - 사당동, 창동차량기지 및 인입선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지하철 3·4 호선 건설공사
- 명칭 : 지하철 3·4 호선 고속철도 (본선 및 부대시설)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 규모

- 3 호선 : 28.9 km
- 4 호선 : 30.3 km
- 차량기지 : 2 개소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518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재명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 부터 7
일이내2) 준공년월일 : 당초 : '85.10.30
변경 : '86.10.30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
세 : 별첨 (생략)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
소, 성명 : 별첨 (생략)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 (대표전화 583-
8923 - 9) 에 문의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33 호

독산제 15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조성 계획

1. 구로구 독산동 제 15 어린이공원

공원 조성 계획 시설 조서

○ 독산 15 어린이공원

외 5 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을 도시공원법 제 4 조와 도시계획
법 제 12 조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공
원과와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인다.

1985.10.30

서울특별시 장

가. 독산 제 15 어린이공원의 5 개소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
별첨나. 독산 제 15 어린이공원의 5 개소
조성계획지적승인 도면 : 생략

구로구독산동 1067-9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계			1,623.6 m ²	100 %
조경시설	1	파교라 - 1 개소	48	2.9
	2	수 목 - 등나무의 4 종 1,623 주		
유희시설	3	미끄럼틀 - 1 개소	50	3
	4	철 봉 - 1 개소		
휴양시설	5	탁 자 - 1 개소	11	0.7
	6	벤 치 - 11 개소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관리시설	7	경계석 - 174 m	482 ㎡	29.6%
	8	보도부력포설 - 0.9 ㎡		
	9	수목보호펜스 - 92경간		
	10	어린이유아원 - 1동 355 ㎡		
	11	휴지통 - 3 개소		
기 타	12	공지 및 녹지	1,332.6	63.8
○개봉 4 어린이대공원			구로구개봉 3 동 271-17.13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계			516 ㎡	100 %
조경시설	1	파교라 - 1 개소	48	9.3
	2	수목 - 등나무외 4종. 1,559 주		
유희시설	3	철봉 - 1 개소	24	4.6
휴양시설	4	탁자 - 1 개소	9.4	1.8
	5	벤취 - 9 개소		
관리시설	6	경계석 - 126 m	76	14.7
	7	보도부력포설 - 0.48 ㎡		
	8	수목보호펜스 - 53 경간		
	9	망펜스 - 23 경간		
	10	휴지통 - 3 개소		
기 타	11	공지 및 녹지	353.6	69.6
○시흥 17 어린이대공원			구로구시흥 3 동 943-16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계			359.4 ㎡	100 %
조경시설	1	수목 - 느티외 3종 1,120 주	31	8.6
유희시설	2	미끄럼틀 - 1 개소	50	13.9
	3	철 봉 - 1 개소		
휴양시설	4	탁 자 - 1 개소	10	2.7
	5	벤 취 - 9 개소		

13-6 제 1210 호 시

보 1985. 10. 30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관리시설	6	경계석 - 110 m	142 m ²	39.5%
	7	보도부력포설 - 0.12 a		
	8	수목보호펜스 - 50 경간		
	9	휴지통 - 2 개소		
기 타	10	공 지	126.4	35.3
○시흥 16 어린이공원			구로구시흥 4 동 169-21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계			251 m ²	100 %
조경시설	1	수목 - 버즘외 3 종 831 주	29	11.5
유희시설	2	미끄럼틀 - 1 개소	50	20
	3	철 봉 - 1 개소		
휴양시설	4	벤 치 - 6 개소	5	2
관리시설	5	경계석 - 70 m	40	16
	6	보도부력포설 - 0.17 a		
	7	수목보호펜스 - 41 경간		
	8	망펜스 - 10 경간		
	9	석축쌓기 - 80 m ²		
기 타	10	공 지	125	50.5
○온수어린이공원			구로구온수동 73-5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계			475 m ²	100 %
조경시설	1	수목: 느티외 3 종 1,165 주	36	7.5
유희시설	2	미끄럼틀 - 1 개소	50	10.5
	3	철 봉 - 1 개소		
휴양시설	4	탁 자 - 1 개소	13	2.7
	5	벤 치 - 13 개소		
관리시설	6	경계석 - 158 m	155	32.6
	7	보도부력포설 - 1.22 a		
	8	수목보호펜스 - 78 경간		
	9	휴지통 - 2 개소		
기 타	10	공 지	221	46.7

구 동 소 공 원		구 토 구 공 동 237-6.258-1.261-3		
구 분	번호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비 고
제			2,162 ㎡	100 %
조 경 시 설	1	과 고 라 - 1 개 소	48	2.2
	2	수 목 - 등 나무 의 5 종 7,061 주		
유 회 시 설	3	미끄럼틀 - 1 개 소	65	3
	4	철 봉 - 1 개 소		
	5	그 네 - 1 개 소		
	6	오 르 기 - 1 개 소		
휴 양 시 설	7	탁 자 - 2 개 소	40	1.8
	8	벤 치 - 48 개 소		
관 리 시 설	9	경계석 - 528 m	930	43
	10	보도부력포설 - 4.97 a		
	11	수목보호펜스 - 436 경간		
	12	석축쌓기 - 320 ㎡		
	13	휴지통 - 8 개 소		
기 타	14	공지 및 녹지	1,079	5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34 호

문래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72 호 (' 85.4.20) 로 조성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시 고시 제 294 호 (' 85.5.3) 로 지적승인 된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공원면적변경과 일부 시설물 설치와 위치변경으로 도시공원법 제 4 조와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시행령 제 6 조 동제 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13 조 2 항

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 사본은 서울특별시 공원과와 영등포구청 공원녹지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인다.

1985.10.30

서울특별시 장

- 가.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및 지적승인조서 : 별첨
나.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지적 승인 도면 : 생략

문 래 공 원 조 성 계 획 총 관 표

번		전		번		후	
시설구분	세 부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비 고	시설구분	세 부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	비 고
총 계		24,402		총 계		23,611	
공원관리 시 설	관리사무소, 종합안내 판, 조명등, 휴지통, 표지판, 동상보호책, 경계용울타리	136	관리사무실 노인정포함	공원관리 시 설	관리사무소, 종합안내 판, 조명등, 휴지통, 표지판, 동상보호책	136	
조경시설	그늘시렁	173	녹지면적	조경시설	그늘시렁	173	녹지면적
유희시설	복합놀이터, 놀이광장	414		유희시설	복합놀이터, 놀이광장	414	
휴양시설	팔각의자, 장의자			휴양시설	팔각의자, 장의자		
교통시설	산책로	4,090		교통시설	산책로	3,527	
편의시설	공중변소, 주차장, 음 수대	1,281		편의시설	공중변소, 주차장, 음수대	1,584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3,268		운동시설	다목적운동장	3,268	
교양시설	동 상	208		교양시설	동 상	208	
기 타	녹지 (잔디밭, 휴식소 등) 지하대미호	14,838	녹지면적	기 타	녹지 (잔디밭, 휴식소, 불수대, 청소년광장) 지하대미호	14,222	
			기존지하시설 (연면적 143㎡)				기존지하시설 (연면적 143㎡)
					소동물사	79	

시 설 조 서													
시 설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전			시 설 명	위 치	개 소	부 지 면 적	후			비 고
			부 지	전 속 규 모	바 닷 면 적					부 지	전 속 규 모	바 닷 면 적	
제			㎡ 24,408	㎡ 572	㎡ 572			5동	㎡ 23,611	㎡ 205	㎡ 389		
관	관리사무소	문래 3가 66	1	136	136	관리사무소	문래 3가 66	1	136	111	123	조적조	지하실 12㎡ 화장실, 노인 점 포함
리	중합인쇄관	"	1			중합인쇄관	"	1					부지면적은 산책로에 포 함됨.
시	조명등	문래 76-9외 9필지	31			조명등	문래 76-9외 9필지	31				철 재	"
설	휴지통	문래 59외 14필지	46			휴지통	문래 59외 14필지	46				"	"
	표지판	문래 59외 3필지	4			표지판	문래 59외 3필지	4				목 재	"
	동상보호책	문래 73	1			동상보호책	문래 73	1				철 재	"
	경계용 울타리	문래 59-3외 4필지	1										
조경	그늘시령	문래 5외 2필지	6			조경	그늘시령	6	173			목 조	녹지면적
시 설	유화	문래 66	1			유화	문래 66	1	48				
시 설	아반	"	1			아반	"	1	366				
유양	발각의자	"	1			유양	발각의자	1				목 조	부지면적은 산책로에 포함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명	위치	개소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구조	시설명	위치	개소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구조			
시설구분	휴양시설	평의자	문래 75 외 6 필지	97	㎡	휴양시설	평의자	문래 75 외 6 필지	97	㎡	목조	부지면적은 산책로에 포함됨.		
	등의자	문래 65 외 3 필지	14			등의자	문래 65 외 3 필지	14			"	"		
교동시설	산책로	문래 59 외 17 필지	1	4,090		교동시설	산책로	문래 59 외 17 필지	1	3,384	마서토			
편익시설	주차장	문래 73	1	1,217		편익시설	주차장	문래 59-6 외 1 필지	1	1,580	아스콘			
	음수대	문래 63 외 1 필지	2			음수대	문래 63 외 1 필지	2			콘크리트	부지면적은 산책로에 포함됨.		
	공중변소	문래 73 외 1 필지	2	64	73	공중변소	문래 74 외 1 필지	2	64	64	73	조적조	지하설 9㎡ 개소당 32.3㎡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장	문래 60 외 8 필지	1	3,268		운동시설	다목적 운동장	문래 60 외 8 필지	1	3,268				
교양시설	운동장	문래 73	1	208	208	교양시설	운동장	문래 73	1	208			기존시설물	
기타	녹지대	문래 59 외 18 필지	4	14,838		기타	녹지대 (잔디밭, 분수대, 화단)		4	14,222			녹지면적	
	지하매립소	문래 66			143	지하매립소	문래 66			143	143	30	콘크리트	지하매립시설물
						소동물사	문래 65	2	79	30	30			제이거 50㎡

◎서울특별시고시제 735 호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고시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로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429 호 (85.6.28)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하왕제 1 구역 제 1, 2 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제 64 조 같은 시행령 제 5 조, 제 56 조,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계획변경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10.30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나. 구역명 : 하왕제 1 구역

다. 면 적 : 총면적 63,270 평방미터

단위 : m²

계	기 준	변 경 후	비 고
1 지 구	25,419	25,687	
2 "	37,851	37,583	
계	63,270	63,270	

라.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 별첨
사업계획변경결정도서 (생략)

마. 변경내용 : 일부가 분할면적 정정에 따른 단순면적 정정 (제1지구)

◎서울특별시고시제 736 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470 호 (73.12.1)로 구역결정되고 동고시 제 346 호 (82.

9.24)로 구역지정변경되었으며, 동고시 제 343 호 (78.11.11)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429 호 (85.6.28)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주택개량 재개발 하왕 1 구역 제 1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7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하였기 같은법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성동구청 주택

파와 하왕 1-1 지구 재개발조합에 비
치한다.

1985.10.30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주택개량 재
개발 하왕 1-1 재개발사업

나. 조합의 명칭: 하왕 1 구역 제 1 지
구 재개발조합

다. 시행구역 및 면적

1) 시행구역: 성동구 하왕 2 동
890-155 번지 일대

2) 면적: 25,687 평방미터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동구 하
왕 2 동 946-18

마. 시행기간: 85.10-87.12.31

바. 사업내용: 아파트 13-15 층 5 동
430 세대 및 부대부리시설

사. 시행자: 주택개량 재개발 하왕 1
구역 제 1 지구 재개발조합

아. 인가일: 85.10.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조서
: 별첨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649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4 호 (85.

9.21) 및 동고시 제 658 호 (85.10.
2)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
시계획시설(학교)와 동고시 제 2 호
(74.1.14)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동 시설(도로)에 대하여 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신정동 산 109-1 번지 학교법인 명
신학원(T 605-5996)에 각각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에 공람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1985.10.30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시행위치:

(학교) 강서구신정동산 109-1 일대

(도로) 강서구신정동 724-726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도로)

명신고등학교와 전입도로

다. 사업규모

(학교) 대지: 변경전 10,512㎡ 후 12,668㎡

건물: " 3,336㎡ 후 7915.9㎡

(도로) B=6m, L=81.5m

라. 사업시행자: 학교법인 명신학원

마. 사업시행기간: 허가일로부터 2 년간

토 지 조 서

1. 학 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전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제 인 주 소 성 명
신정동	산109-1	임	13,884	10,512	학교법인 명신학원
"	산108-2	"	2,579	2,151	없 음 강남구양재동 9-66 정 금 순 없 음
계			16.463	12.663	

2. 도 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전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제 인 주 소 성 명
신정동	726-2	답	1,781	73	서울특별시
"	724	전	1,441	188	없 음 강서구신정동 724 김 갑 현 경기도부천시소사동 98브럭 19-3 노트 (10 통 4 반) 윤 봉
"	725	답	3,440	326	도봉구우이동 90-5 최 영 익 서울특별시
계			6.662	587	